

## 참고 2025년 12월말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납부 관련 유의사항

❖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「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」를 제공합니다.

- 「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」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2025.6.30.까지의 수정된 사항(수정신고, 세무서장의 결정 및 경정내역 등)을 반영하여 제공합니다.

### ※ 법인세 경정내역 등 확인방법

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→ 세금신고 → 법인세 → 중간예납 세액조회

❖ '25.12월 결산법인은 '25.9.1.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 중간예납세액 분납을 신청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중소기업의 경우: '25.11.03. 중소기업외의 기업인 경우: '25.10.01.

❖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.

※ 중간예납결손금 소급공제제도는 2020년 귀속 사업연도에 한시적으로 적용

## □ 자주 묻는 질의응답(FAQ)

### 1. 중간예납 납부기한

참고  
1-1

#### <중소기업>

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후 납부서를 출력하였더니 분납 납부서 상 납부기한이 '25.10.31.이 아닌 '25.11.03.로 표시됩니다.

- ① '25.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및 납부기한은 '25.08.31(토)이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다음날인 '25.09.01(월)로 자동 연장됩니다.
- ② 중소기업은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는 바, 분납기한은 '25.11.01(토)이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다음날인 '25.11.03(월)로 자동 연장됩니다.

\* 비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한: '25.10.01(수)

#### ※ 법인세법 제63조 [중간예납 의무]

-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.

#### ※ 법인세법 제64조 [납 부]

-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(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)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.

#### ※ 국세기본법 제5조 [기한의 특례]

-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, 신청, 청구, 그 밖에 서류의 제출, 통지,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.
  1. 토요일 및 일요일 (이하 생략)

참고  
1-2

중간예납세액 분납을 위한 중소기업여부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?

- ①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 판단합니다.
- ②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(6개월)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바, 중간예납기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 판단합니다.

※ 서면2팀-1503 (2005.09.20.) ⇒ 직전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납부 시 중소기업 판단  
중간예납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따라 그 분납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

## 2.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작성

참고  
2-1

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 대상인 중소기업입니다.  
중간예납세액을 “0”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를 제출하려고 하였더니 제출되지 않습니다.

- ①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의무 없는 경우,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제출하지 않습니다.

참고  
2-2

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작성 시 ⑫사업연도, ⑬직전사업연도 월수, ⑭ 예납기간, ⑮수입금액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?

- ⑫ 사업연도: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.
- ⑬ 직전사업연도 월수: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.
- ⑭ 예납기간: 중간예납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의 기간을 적습니다.
- ⑮ 수입금액: 중간예납기간(중간예납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)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.

※ 작성 예시 (사업연도가 1.1. ~ 12.31.인 경우)

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: 2025.1.~2025.12.31.

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: 2024.1.1.~2024.12.31.

중간예납기간: 2025.1.1.~2025.06.30. 수입금액: 10억

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58호서식] <개정 2025. 3. 21.>

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##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① 사업자등록번호	② 법인등록번호					
③ 법인명	④ 전화번호					
⑤ 대표자 성명						
⑥ 법인구분	1.내국 2.외국 3.외투	⑦ 종류별 구분	중소기업	일반기업		
				중견기업	상호출자 제한기업	그 외 기업
				영리법인	30	83
	비영리법인	60	74	84	94	50
⑧ 소재지						
⑨ 업태	⑩ 종목				⑪ 주업종코드	
⑫ 사업연도	2025.1.1~2025.12.31	⑬ 직전 사업연도 월수	12개월	⑭ 예납기간	2025.1.1~2025.6.30	
⑮ 수입금액	1,000,000,000원	⑯ 신고일				
⑰ 신고납부 구분	1. 정기 신고 2. 기한 후 신고					

<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(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) 발췌>

###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입력

#### ○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처리

[새로작성하기] [신고서 불러오기]

*사업자등록번호	101 - 82 - 42933		
*사업연도	2025-01-01 ~ 2025-12-31	확인	『확인』클릭 후 세부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.

#### ○ 사업자 세부사항

*상호(법인명)	다침완선공어용영신우감도12345678901234!		*성명(대표자)	한보송	
*전화번호	02 - 4444 - 8888	전자메일주소	abcde @ daum.net daum.net		
주소	주소검색	도로명주소	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9-9	A동 67층 1208호 위례왕나눔 나면침타 9-9-3(내수동, 아)	
		지번주소	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9	아이주보문대 A동 67층 1208호 위례왕나눔 나면침타 9-9	
*법인구분	내국법인	*종류별구분	[30]영리 기타 중소법인		
*주업종코드	730000	코드조회	업태	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	
*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	<input type="radio"/> 해당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미해당	*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	<input type="radio"/> 해당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미해당	종목	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

#### ○ 신고사항

*예납기간	2025-01-01 ~ 2025-06-30		
*직전사업연도월수	12 개월	중간예납기간 수입금액	1,000,000,000 원

<국세청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입력화면 발췌>

### 3. 「홈택스」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

참고  
3-1

<「홈택스」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> 화면에서 조회되는 중간예납 세액과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한 중간 예납세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.

①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에서 조회되는 중간예납세액은 2025.6.30. 기준의 수정신고서, 결정된 기한후신고서, 세무서의 결정 및 경정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.

☞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('25.03.31)후부터 '25.6.30. 이전에 제출, 결정 또는 경정 된 법인세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법인세법 기본통칙 63-0-3 [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]

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“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”라 함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(「국세기본법」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) 또는 결정 ·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. (이하 생략)

※ 법인세 경정내역 등 확인방법

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접속 → 나의 홈택스 → (나의 세금신고 · 나의 납부 체납에서 신고·고지 · 환급) 목록조회

사업자등록번호	과세기간	신고일자	수입금액	과세표준	차감(납부)할세액	신고구분	
101-82-42933	2025-12	2025-07-17	90,000,000	0	50,000	예정(중간예납)	정기신고
101-82-42933	2025-05	2025-07-04	0	0	0	정기(확정)	정기신고
101-82-42933	2025-10	2025-06-10	5,846,834,158	0	2,040,727,1...	예정(중간예납)	정기신고
101-82-42933	2025-12	2025-05-30	50,000,000	0	0	정기(확정)	정기신고
101-82-42933	2025-01	2025-03-28	80,000,000	-10,010,000	-2,000,000	정기(확정)	정기신고
101-82-42933	2025-01	2025-03-05	0	84,000,000	2,560,000	정기(확정)	정기신고
101-82-42933	2015-12	2024-12-03	0	-12,000,000	0	정기(확정)	기한후신고

참고  
3-2

<「홈택스」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> 화면에서 조회되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세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 가산세 금액이 조회됩니다.

-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 가산세에는 법인세를 무납부, 과소납부하여 부과 또는 납부된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됩니다.

(서면-2023-법인-2784, '24.5.1)

☞ '24.12 귀속 법인세 고지 또는 납부내역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 
3-3

2024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여 '25.7.20.에 인용되었습니다.  
<「홈택스」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> 화면에서 조회되는 중간예납 세액에는 경정청구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- ①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에서 조회되는 중간예납세액은 '25.6.30.후에 접수된 수정신고서, 기한후신고서 및 세무서의 결정 및 경정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- ② 경정청구 인용결정 등으로 법인세 감액된 경우로써,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'25.09.01.까지 경정된 세액을 반영하여 중간예납세액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※ 법인세법 기본통칙 63-0-3 [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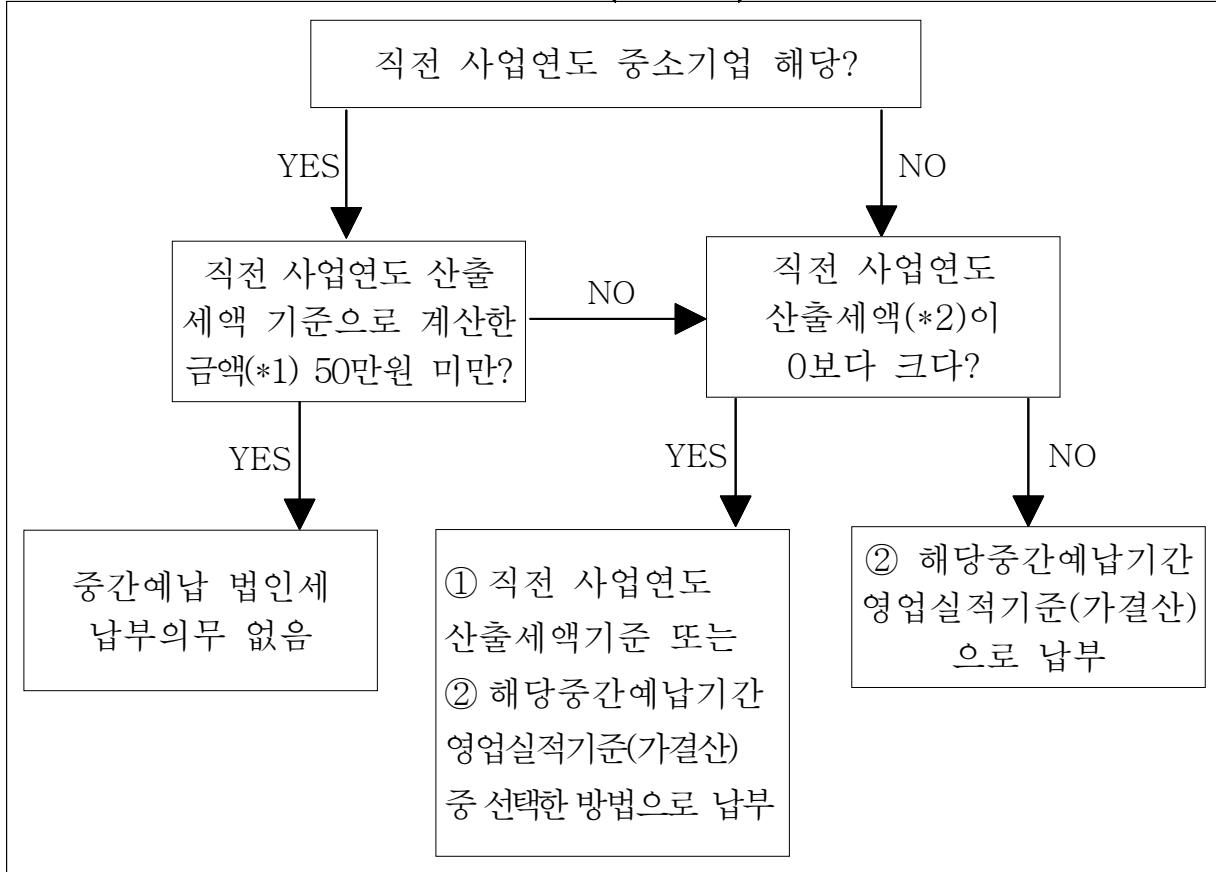
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“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”라 함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(「국세기본법」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) 또는 결정 ·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. 다만,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.

참고  
3-4

중소기업이고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결손이라 납부의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<「홈택스」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> 화면에서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 신고하라고 안내됩니다.  
(수정신고 또는 세무서 경정 등으로 증액된 산출세액 없는 경우)

- ① (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확인)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⑯종류별구분이 중소기업(11,21,30,60)으로 체크되어있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안내됩니다.
- ☞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재검토하시어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(가산세 고지 또는 납부내역 확인)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가 2025.6.30.까지 수정신고·경정·결정으로 가산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안내됩니다.
- ☞ 이 경우,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 하여야 합니다. (직전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하여 산출세액 없는 바,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방식 선택 불가)
- ③ (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여부 확인) 2025.6.30. 현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또는 기한후신고서 제출하였으나 신고서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안내됩니다.
- ☞ 이 경우,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 하여야 합니다.

## ※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방법 선택 (흐름도)



(\*1)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:

$$[(A - B - C - D) \times 6 \div \text{직전 사업연도 월수}], A = ⑪ + ⑫ (\text{가산세액도 포함})$$

(\*2)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:  $A = ⑪$  ( $⑫$  가산세액은 제외)

⑪ 산 출 세 액(⑪ = ⑫)		A
⑪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공 제 감 면 세 액	17	B
⑫ 차 감 세 액	18	
⑪ 최 저 한 세 적 용 제 외 공 제 감 면 세 액	19	B
<b>⑫ 가 산 세 액</b>	20	A
⑫ 가 감 계(⑪ - ⑫ + ⑬)	21	
⑬ 중 간 예 납 세 액	22	
⑭ 수 시 부 과 세 액	23	D
⑮ 원 천 납 부 세 액	24	C
⑯ 간 접 투 자 회 사 등 의 외 국 납 부 세 액	25	
⑰ 소 계(⑪ + ⑫ + ⑬ + ⑭ + ⑮)	26	
⑲ 신 고 납 부 전 가 산 세 액	27	
<b>⑳ 합 계(⑰ + ⑲)</b>	28	

<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발췌>

- \*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가결산만 가능, 단,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산출세액(가산세 제외)이 0보다 큰 경우 신고방법 선택 가능('25.1.1.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)

참고  
3-5

직전사업연도 7월21일에 설립등기 한 12월말 법인입니다.  
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200만 원으로 확인되는데  
<「홈택스」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> 화면에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 
산출세액의 50%(100만원)가 아닌 200만 원을 납부하라고 안내되어  
있습니다.

- ①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구 분	계 산 방 식		
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	중간예납 세액	=	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(가산세를 포함하고, 토지등 양도소득 및 투자· 상생협력 법인세는 제외) - 직전 사업연도 공제·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x 6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

- ② 이 때,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는 설립등기일부터 계산하는 바, 6개월이 됩니다.  
(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합니다)

☞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*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[사업연도의 개시일]

-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.

-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. (이하 생략)